

제 호

방문판매업 신고증

- 상호
- 소재지
- 대표자의 성명
- 대표자의 생년월일(남·여)
- 전자우편주소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